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2 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 장철민·이상직·한병도

김남국 · 김경만 · 박성준

유미향 • 황운하 • 김수흥

이상민 · 최종윤 · 정성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출시설, 비점오염원, 기타수질오염원,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,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.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(안 제38조의5제2항, 제68조제1항제6호, 제73조제1의2호, 제74조의2)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5제2항 후단 중 "제74조제2항"을 "제74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제6호 중 "제74조제2항"을 "제74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73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의2 중 "제74조제2항"을 "제74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38조의5(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	제38조의5(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	
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	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	
면제 등) ① (생 략)	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	②	
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		
으로 설치・유지・관리할 수 있		
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.		
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	<u>제74</u>	
<u>2항</u>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	조제3항	
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		
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		
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		
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		
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		
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		
·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		
다.	<u>.</u>	
③ · 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	
제68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환경	제68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	
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는 환경		
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		
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		
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		
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		

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,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,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, 측정기 기의 정상운영, 특정수질유해물 질 배출량조사의 검증,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, 제61조 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 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 •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 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 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<u>제74조제2항</u>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
- 제73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, 검사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1 (취레기 기수)	
1. ~ 5. (현행과 같음)	
6. <u>제74조제3항</u>	
3-0 - () 2	
제73조(수수료)	
1. (현행과 같음)	
1의2.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	

2. ~ 5. (생략)

제74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지의제)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	등록 또
는 변경등록	
2. ~ 5. (현행과 같음)	
제74조의2(벌칙 적용에서	공무원
의제) <u>제74조제3항</u>	